

정부, 팔당호 준설 '적극 검토'로 선회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퇴적물을 준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학계 등의 '준설 불가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극 검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일부 환경학자와 환경단체의 '준설 무용론'에도 불구하고 최재욱 장관 등 환경부 고위관계자들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준설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내년 예산에까지 이미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9월 22일 국립환경연구원이 사당동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개최한 '팔당호 준설 타당성 검토' 공청회에서 최재욱환경부장관은 "지난 93년의 조사결과에서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지 점에서는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내년에 준설 관련 현장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양방철 환경정책실장도 "특히 경안천 하류에 축산폐기물 등이 계속 퇴적되면 인근의 상수원 취수구도 막을 수도 있다"면서 "수질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대대적인 준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중합기술개발의 유기춘부사장은 "과거에는 골재 채취 등을 위해 2차 오염에 대한 고려없이 준설이 시행됐으나 최근에는 오염을 방지하는 공법이 개발됐다"면서 "팔당호 준설의 경우 현장에 적합한 진공흡입식 공정을 도입하면 2차 오염없이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다"며 오염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준설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 또는 "준설해도 소용이 없다"는 '준설 무용론'도 학계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일부 환경단체는 팔당호 오염퇴적물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수질이 급속히 악화될 수도권 2천만명에게 공급되는 상수원의 취수가 한동안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강원대 전상호 교수(환경학)는 "수질개선의 수단으로 준설할 경우 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부유나 확산, 생태계의 교란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환경친화

적이고 경제적인 준설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환경연구원 공동수 박사는 "오물이 들어오는 곳은 비워도 다시 오물로 채워진다"면서 "빠른 재퇴적으로 준설의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준설에 수천억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밀조사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작년 10월초 국정감사에서 팔당호 준설문제가 국회의원 의속 의원들에 의해 강하게 제기돼 운여준 당시 환경부장관이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당시 국회의원 이혜찬, 현영애, 방용석 의원 등은 국정감사 직전에 팔당호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팔당호 바닥에 쌓인 60cm~9m의 퇴적층에는 납, 수은, 카드뮴 등 각종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상수원을 오염시킨다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 이들은 팔당호의 총 퇴적물량은 1천만 t에 이르고 이 가운데 경안천에서 유입돼 퇴적되는 양이 전체의 80%에 달하고 있으며 퇴적물에는 부영양화 주범인 총질소와 인의 함량도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팔당호에는 쇠우렁이, 눈우렁이, 말조개, 뿔조개 등 패류가 4천1백50여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패류중 60%가 폐사된채 방치돼 수질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팔당호 준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국회의 이같은 조사 결과를 존중하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와 함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상수원 수질개선대책도 원만하게 추진하는 효과도 노리는 등 결국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다목적용 정책으로 풀이된다.

악취 유발업체 과징금 최고 5,000만원

암모니아나 톨루엔, 황화수소 가스 등 악취를 유발해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는 업체에 최고 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기간이 10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화공업체 등이 대기배출업소에 준한 약취 제거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약취를 풍기면 조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조업정지로 인해 공익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조업정지 대신 부과해온 과징금이 현행 50만 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1백배 오른다.

또 매년 배출허용치를 초과한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기간을 종전의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거나 3백만 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기준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 개정안에서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대도시의 대기오염 규제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장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실천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국고지원 중단 등 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대기오염도 측정을 시·도지사의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대기오염 발령권한도 시·도에 넘겨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영업구역 제한 폐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9월 25일 업체 소개 시·도로 제한된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 경기도 업체가 서울시에서 나오는 산업 및 건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부 관련 규제 6백15건중 3백9건을 올해중 정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그러나 '전기로 먼지' 같은 일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완화키로해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업의 등록제를 폐지, 자유업으로 변경하며 생수에 대한 TV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의 경우, 자본금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산업체 자본금, 실험실 면적, 장비 등에 관한 현행 기준요건을 원칙적

으로 폐지, 환경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수질 오염물질 측정대 한 업체에 대해 단 한번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도록 한 규정을 고쳐 최소한 3군데서 시료를 채취하도록 요건을 강화, 측정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환경관리인 등 환경관련 자격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의무를 폐지하고 신규자격 취득자 및 범위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자연공원내 폐기물 처리를 위해 식품제조업체에 물리고 있는 출연금 부과제도를 없애고 환경관리인 임명 신고제도, 변경명령 제도 등도 폐지키로 했다.

환경오염 발생시점부터 예방 '절실'

지난 9월 29일 강원도 평창 회의에서 채택된 유엔환경계획(UNEP)의 '국제청정생산 선언문'은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시점부터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오염처리장치설치, 인력투입 등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현재의 사후오염관리방식으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을 강조하는 청정생산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몸살을 앓고있어 환경 오염방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절실함도 배어있다.

이날 채택된 선언문은 이런 판단을 근거로 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 인식의 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환경위해성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들은 생활쓰레기 등 오염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교육과정에도 청정생산의 개념과 원리를 도입해 깨끗한 소비양식을 만들어 내자고 선언문은 촉구 하고 있다.

선언문은 또 기업과 소비자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환경정책이 사후오염관리에서 사전예방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각 국가에는 국가

별로 갖고 있는 청정생산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선언문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질지 미지수다.

또 각 국가의 경제사정을 감안할때 기존 생산방식과 소비패턴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청정생산 기술이전과 비용지원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있다.

평창회의는 그동안 유럽에서만 논의되던 '청정생산' 문제에 대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까지 참여, 본격적으로 고심하기 시작했다는 데서 개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 불법매립 현장조사 착수

3천3백㎡이상 되는 공유수면매립지나 형질변경으로 택지를 조성한 땅, 토석채취장의 쓰레기 불법 매립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가 시작됐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두달간 과거에 쓰레기를 불법 매립했을 우려가 있는 저지대나 간척지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 합동으로 서류조사와 탐문조사를 한뒤 굴착작업 등으로 쓰레기를 종류와 양을 확인하라고 지난 10월 1일 시도에 지시했다.

이번 일제조사에서 시·군·구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도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조사결과를 취합·분석하며 지방환경청은 조사진행상황과 사후처리 등을 지도 감독하게 된다.

환경부는 또 최근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쓰레기 불법매립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유수면매립, 농지전용, 택지조성·재개발·재건축 공사장 등 건설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10월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중 환경부는 검찰청·경찰청과 협의해 불법 매립자와 수집운반자, 배출자를 철저히 추적해 원상복구시키는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도하는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쓰레기 불법 매립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수집·운반업자의 불법처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김학엽 환경부 폐기물관리과장은 "위생매립 개념이 없던 70~80년대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적당히 버린 저지대나 간척지 등을 택지 등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더미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전국적인 현장조사를 거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예산 먹는물 개선에 집중 투입

환경부는 내년 예산의 절반이상을 물관리 분야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 규모를 1조1천4백10억원으로 편성, 올해보다 2.5%늘려 잡은 가운데 전체 예산의 51.4%인 5천8백66억원은 물관리 예산으로 책정했다고 지난 10월 6일 밝혔다.

물관리 예산 증가율은 3.1%지만 올해 추경 예산에 공단하수처리장 예산이 2백억원 증액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율은 6.8%에 달한다.

특히 수질오염 방지사업을 위한 양여금이 환경예산과는 별도로 물관리예산보다 많은 6천7백14억원이나 책정돼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됐다.

물관리 예산 중 섬지역의 식수원 개발과 중소도시·농어촌의 상수도 시설에 8백 73억원, 낡은 수도관 개량에 1천3백38억원, 하·폐수처리장 확충에 3천3백33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 개선 대책비로 50억원을 새로 계상해 준설여부를 가리기 위한 퇴적물 영향을 조사하고 오염감시 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낙동강 수계 고도정수처리비는 올해 46억원에서 내년 1

백43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환경부는 ▲ 환경호르몬 잔류실태와 토종생물 영향 조사에 15억원 ▲ 먹는 물의 바이러스와 방사성 분석장비 구입비 5억원 ▲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 4억원 ▲ 국가간 이동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소 설치에 11억원 등 신규사업 예산도 책정했다.

이밖에 국립공원 쓰레기 수거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2백33억원, 국립공원의 탐방시설과 집단시설지구 정비에 3백90억원을 배정하고 중소기업 오염방지시설 설치에 5백억원, 환경기술개발에 40억원을 용자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공회전시 오염물질 4배 배출

자동차를 매일 1분씩 공회전할 경우 한달 평균 1천1백95원이 낭비되며 오염물질도 공회전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비해 4배나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가 지난 10월 8일 녹색교통운동과 에너지관리공단의 의뢰를 받아 레간자 승용차(배기량 2천cc, 오토매틱)를 이용해 실시한 엔진공회전시 오염물질 배출량과 연료소모량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측정결과 공회전을 할 경우 1분 동안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은 4.43g으로 시동후 즉시 출발할 경우의 1.16g에 비해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승용차 한 대가 매일 1분씩 공회전을 할 경우 한달 평균 0.996l의 휘발유가 소비돼 휘발유값을 1당 1천2백원으로 계산하면 1천1백95원이 낭비된다는 것.

자동차 운행중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시 정차시키고 공회전을 할 경우도 1분에 0.0405g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며 하루 평균 5분씩 공회전을 할 경우 한달 평균 3천6백32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교통운동측은 "1분 정도의 공회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나라들 처럼 아이들링 규제법(엔진공회전 금지법)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해양 배출량 급증 개별 격감

분뇨와 식품공장 폐수 등 폐기물의 해양 배출량이 지난 6년간 4배나 늘어난 반면 간척·매립 등으로 개펄 면적은 11년새 15% 줄어 해양환경 보전에 적신호가 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지에서 운반해 바다에 버린 폐기물 배출량은 모두 5백64만3천t으로 지난 91년의 1백39만1천t보다 4배이상 증가했다.

해역별로는 동해 배출량이 40만9천t에서 3백63만t으로 9배나 늘었고 서해 배출량도 2배이상 증가했다.

현재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 배출해역은 군산 서방 2백km 공해상의 서해병 해역과 포항 동방 1백25km 공해상의 동해병 해역, 부산 동방 90km 공해상의 동해정 해역이다.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은 분뇨와 정화조 오니, 수산물 가공 잔재물, 식품공장과 생산가계의 폐수와 폐산 폐알칼리 등이 있으나 내년부터는 폐기물 배출을 규제하는 런던협약에 따라 폐산과 폐알칼리는 해역배출이 금지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 서해와 동해는 반폐쇄성 해역으로 폐기물의 해역배출에 신중해야 하고 ▲ 식탁 단백질공급량의 50%를 담당하는 바다의 폐기물 다량 배출에 대해 국민보건과 환경위생 측면에서 과학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단과 농지 확보를 위한 매립과 간척 등으로 우리나라 개펄은 전체적으로 지난 87년 2천 8백 14km²에서 98년 현재 2천3백93km²로 15% 줄었다.

개펄 면적을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11년새 2백19km²에서 1백13km²로 절반만 남았고 충남은 40%, 인천·경기지역은 22% 각각 줄어든 반면 부산·경남은 17%, 전남은 11% 각각 늘어 대조를 이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환경과 육상, 대기환경과의 경계위치에 있는 개펄 생태계의 특수성과 잠재적 가치를 감안해 매립보다는 보존 위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